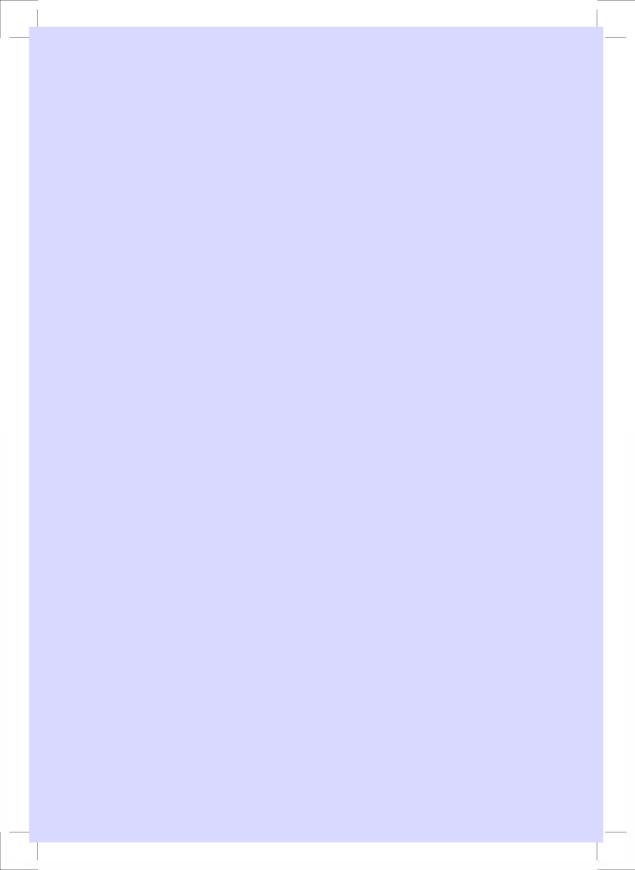
369뉴테크NH암보험 I무배당I_2404

약 관 | 판매월 2025,01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이용 Guide Book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 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3 QR



)_2404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 등을 안내드리오니,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보험금 지급사유 등」도 반 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22조(청약의 철회)	P.69	
3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71	
4	제24조(계약의 무효)	P.73	
6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65	
6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P.78	
7	()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	P.79	
8	제34조(계약자인 임임해지 및 피보함자인 서면동의 철회권) 제37조(해약환급금)	P.80 P.82	
9	제38조(보험계약대출)	P.82	

가

아래 7가지 팀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된 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 이 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P.7

를 이용하시면 약관 내용 중 핵심적
② 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체크항목 P5

가 順 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

③ 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약 색인 P.42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④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용어해설 P.43

OR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P.4

등

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

약관 조항 등이 , 되거나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www.nhlife.co.kr), (1544-4000)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명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상품명: 369뉴테크NH암보험(무배당) 2404

보험상품의 종목 : 암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u>○ 암수술</u> 뿐만 아니라 암검사비까지 매년 보장!! (주계약 기준)

암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를 매년 보장합니다.



초전도 자석, 고주파 등으로 조직, 혈관을 2 · 3차원으로 검사



고주파음을 이용한 조직 영상 생성 검사



컴퓨터와 X선을 이용하여 얇은 두께로 이루어진 양질의 영상을 얻어 미세한 병소의 정밀한 진단을 위한 3차원 영상 검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의 약칭으로 생체기능의 움직임(세포 대사의 상태)를 촬영, 포도당에 미량의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물질을 함유시킨 것을 체내에 주입하여 검사



급여 특정 NGS유전자 패널검사

차세대 유전자 서열분석법의 약칭으로 암세포의 유전정보가 당긴 D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암 유발 유전자 들연변이 검사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369뉴테크NH암보험(무배당) 2404

♠ 369 : 3만원, 6만원, 9만원 중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 : 암수술자금, 암검사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 2





적용금리 고정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주계약	암수술자금 ('암'으로 수술시), 암CT검사급여금, 암PET검사급여금, 암MRI검사급여금, 암초음파검사급여금, 급여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급여금 ('암'으로 진단시)	가입후 <mark>90</mark> 간 보장 제외
암납입면제특약 (주계약,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암'으로 진단시)	가입후 <mark>90</mark> 간 보장 제외
암진단특약 (갱.비갱,무)_H	일반암진단보험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소액암진단특약 (갱,비갱,무)_H	전립선암진단보험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플러스항암방사선·약 물치료특약(갱,무)_C	항암방사선・약물치료지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특약(갱무)_C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자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플러스암직접치료통 원특약(갱,비갱,무)_H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 원급여금,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암'으로 통원시)	가입후 <mark>90</mark> 간 보장 제외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갱,무)_C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다반,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특약:갱위_C	항암양성지방사선치료지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 료특약(갱무)_C	항암세기조절방사산대로지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 가치료특약(갱무)_C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자금	가입후 <mark>90</mark> 간 암보장 제외

A씨는 가 2 이 지나서 을 판정받아 보험회사 에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후 90

을 안내



감액지급 50% 이 보험에는 <mark>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mark>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7 L	Flue	710117171 11 1110
구분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주계약	암수술자금, 암CT검사급여금, 암PET검사급여금, 암MRI검사급여금, 암초음파검사급여금, 급여특정NGS유전자패널검 시급여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50% 지급
암진단특약 (갱.비갱,무)_H	일반암진단보험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mark>50%</mark> 지급
소액암진단특약 (갱,비갱,무)_H	전립선암진단보험금, 소액암진단보험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50% 지급
플러스항암방사선·약물 치료특약(갱,무)_C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자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50% 지급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특약 (갱무)_C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자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50% 지급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약(갱,무)_C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지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50% 지급
다반 <mark>로봇암수술특</mark> 약 (갱무)	다빈치로봇암수술자금1 다빈치로봇암수술자금2	가입후 1 간 보험금 <mark>50%</mark> 지급
항암왕 방사 선 로 특약 (갱 무 _ C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mark>50%</mark> 지급
항암세기조절방사산치료특 약갱무 <u>C</u>	당에서생절지대엄양	가입후 1 간 보험금 <mark>50%</mark> 지급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기치 료특약(강무)_C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자금	가입후 1 간 보험금 50% 지급

보장한도 최초 1회한

이 보험에는 <mark>보험금 지급한도</mark>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주계약	암CT검사급여금, 암PET검사급여금, 암MRI검사급여금, 암초음파검사급여금, 급여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급여금	1 보장
암진단특약 (갱.비갱,무)_H	일반암진단보험금	1 에 한해 보장
소액암진단특약 (갱,비갱,무)_H	전립선암진단보험금, 소액암진단보험금	1 에 한해 보장
플러스항암방사선·약물 치료특약(갱,무)_C	항암방사선・약물치료자금	1 에 한해 보장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갱,무)_C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자금	1 에 한해 보장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 특약(갱,비갱,무)_H	상 급종 합병원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1 1 30 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약(갱,무)_C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자금	1 에 한해 보장
다빈치로봇암수술특약 (갱,무)	다반,	1 에 한해 보장
항암양성지방사선치료특 약갱무 <u></u> C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1 에 한해 보장
항암세기조절방사산치료 특약(갱무)_C	하나시생절지다	1 에 한해 보장
특정항암호르몬약물하가 치료특약(갱위_C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자금	1 에 한해 보장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한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경 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03.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보험에는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계약은 <mark>갱신할 때 마다</mark>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 🧃 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

암진단특약(갱,비갱,무) H. 소액암진단특약(갱,비갱,무)_H, 플러스항 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무)_C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 무) C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비갱,무) H ,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특약(갱,무) C. 다빈치로봇암수술특약(갱,무). 특정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특약(갱무) C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무) C 항 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무) C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보장성보험



- ① 이 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한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 가입한 특약의 경우 주계약과 보험기간이 다릅니다. (특약별 보험기 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병력자보험





- ① 이 보험의 2형(간편가입형)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시절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 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 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01.

69 페이지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mark>청약을 철회</mark>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가 가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 는 가

02

71 페이지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1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03. 73 페이지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2형간편기업형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기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에 기입한 경우

※ 상기 내용은 주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이며, 특약의 무효 사항은 특약별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64 페이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mark>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mark> 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 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2007. 6. 28. 2006 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05. 78 페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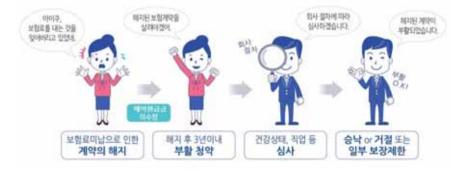
※ 납입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



: 제2회이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06. () 79 페이지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mark>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mark>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 (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07. 82 페이지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된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2)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mark>보험계약대출</mark>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8. 61 페이지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방 문	전국 농축협 지점, NH농협은행 지점, NH농협생명 지점
우 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서울마포우체국 사서함 13호 NH농협생명 지급심사정보입력탐(미래) (우 04156)
팩 스	02)6971-6040 02)6971-6060
홈페이지	http://www.nhlife.co.kr > 고객센터 > 보험가이드 > 사고보험금 청구

: NH

1544 - 4000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호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내방인 신분증 (대리 청구 시)
- 청구인(수익자) 통장사본(단, 수익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제외)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암진단 시 : 암진단 확진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진단서 등
- 암검사시: 전산회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서 PET검사결과자등
- 수술 시 :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입원 시 :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항암사산료시: 항암사산료확인서등
- 항암약물치료 시 : 항암약물치료확인서 등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증명서 등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시 : 특정면역 항암약물허가치료증명서 등
- 사망시: 사망진단서(사체감안서), 사망사실이 확인된 기본증명사등 청구서 (당사양식)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 369 NH ()_2404



CONTENTS

01 가나다순 특약 색인	- 42
02 보험용어 해설	- 43
03 보험약관	
369뉴테크NH암보험 무배당 _2404 주계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45
· - ·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용어의 정의2】	— 4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49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조【'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52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52
제6조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자기공명영상 (MR) 검사'및 '초음파 검사'의 정의】———	— 5 6
제7조【'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의 정의와 장소】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u> </u>
제1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61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u> 62 </u>

제15조【주소변경통지】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17조【대표자의 지정】	- 6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64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65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 67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67
제21조 【보험계약의 성립】	- 67
제22조 【청약의 철회】	- 69
제2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71
제24조 【계약의 무효】	- 73
제2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26조 (보험나이 등)	
제27조 【계약의 소멸】	- 7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76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77
제30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77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overline{}$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79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80
제3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7조 【해약환급금】 —————————————————————	- 82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39조【계약지적립액의 인출】	- 83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83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84
제41조【분쟁의 조정】	
제42조【관할법원】 ——————	
제43조【소멸시효】	
제44조 【약관의 해석】	
제4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87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7조【개인정보보호】	
제48조【준거법】 ———————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9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93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96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97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98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99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0
[별표 7]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분류표	101
[별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02
암납입면제특약 주계약,무배당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103
제2관 보험료 납입면제	104
제3조 (임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04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106
제6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106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	107

제8조 【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 107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1 0 9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109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09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111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 111
제13조 【특약의 무효】	— 112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	— 113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113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113
제17조【특약의 보험기간】	 11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11 4
제18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114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114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115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11 5
레어 저 『게이다이 이어든데다!』	115
제21조 (계약시작 함약에 해지)	 115
제22조 (해약환급금)	 116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 117
제7관 기타사항	– 11 7
제2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별표 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 118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120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121
[별표 5] 보험료를 납입면제 할 때의 적립이윰 계산	

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_H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 2 3
제1조【목적】	— 123
제2조 【용어의 정의】	— 123
제에 보신되어 되고	10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27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129
제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13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 131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13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31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22
제12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133
제13조【특약의 무효】	— 135
제14조 【회사의 보장개시】	— 136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7조【특약의 갱신】——————	— 137
제18조【특약의 보험기간】	— 13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1 3 9
제1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 급금 등	 141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141
제23조 [해약환급금]	 142
제7관 기타사항	142
제24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4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145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147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 48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_H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49
제1조 【목적】	 149
제2조 【용어의 정의】	—— 14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0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50
제4조【'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 153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53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 157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158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158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49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 14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150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153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 153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54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56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156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158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 【계약 전 일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59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14조 【특약의 무효】	
제15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6조 【피보험자의 범위】 ——————	— 163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8조 【특약의 갱신】	
제19조【특약의 보험기간】	— 166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166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 166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 167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한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 168

제2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24조 【해약환급금】	169
제7관 기타시항	169
제25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9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70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77
플러스항암방사선 · 약물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	<u>C</u>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17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78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181
제5조 ('항암약물치료' 의 정의) —————— 제6조 (보험금의 지급시유) ————————————————————————————————————	181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84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85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8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87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189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 189
제15조 【특약의 무효】	— 191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191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18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 192
제19조【특약의 갱신】	— 192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 19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194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194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 195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196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196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196
제25조 【해약환급금】	 197
제26조 [배당금의 지급]	— 198
제7관 기타시항	- 198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198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99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 201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203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204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I_C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205
제1조【모전】	— 205
제2조 【용어의 정의】 ——————————————————————————————————	— 20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06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06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208
제5조【'특정면역항암제'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208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210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215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21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17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217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217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219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 219
	- 221
제16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	- 222
제18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 222
제19조 【특약의 갱신】	- 222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 22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24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224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225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 225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226
제25조 【해약환급금】 ————————————————————————————————————	
제26조【배당금의 지급】	- 228

제7관 기타사항	 228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28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229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u> </u>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233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233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u> </u>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_H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39
제1조【목적】	<u> </u>
제2조【용어의 정의】	— 23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40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u> </u>
제4조【'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43
제5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243
제6조 ('암 등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245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248
제7조의2【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248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49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50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51
제11조 【보험금의 청구】 ———————	 252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52
제1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53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의 효과)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256
제16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256
제17조 【특약의 무효】	- 258
제18조【회사의 보장개시】	- 258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	- 259
제2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1조【특약의 갱신】	
제22조【특약의 보험기간】	— 26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261
제23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261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 263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mark>263</mark>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 263
제2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27조 【해약환급금】	
제28조【배당금의 지급】	- 265
제7관 기타사항	
제2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265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 268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270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27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I_C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27 4
제1조【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 27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274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274
제4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277
제5조【'표적항암제'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79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79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82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283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285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285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285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286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_ 200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14조 (특익의 정립 및 조절) 제15조 (특약의 무효)	
제16조 【흑식의 구요】 제16조 【회사의 보장개시】	_ 200 200
제17조 【회사리 모양계시】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	200
제17조 [파도함시의 담규]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제19조【특약의 갱신】	201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20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293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 294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295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95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295
제25조 【해약환급금】	296
제26조 【배당금의 지급】	296
제7관 기타시항	296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96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297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299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301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02
다빈치로봇암수술특약 갱신형,무배당 약관	
	31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1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1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19 31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 제2조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319 319 32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319 319 320 32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319 320 320 320 32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319 319 320 320 321 32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제5조 ['다빈치로봇 암수술' 의 정의]	319 320 320 321 325 32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제5조 【 '다빈치로봇 암수술' 의 정의】 제6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319 320 320 321 325 325 32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제5조 【 '다빈치로봇 암수술' 의 정의】 제6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19 320 320 321 325 325 326 32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제5조 ['다빈치로봇 암수술' 의 정의] 제6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19 320 320 321 325 325 326 32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조 ['수술' 의 정의와 장소] 제5조 ['다빈치로봇 암수술' 의 정의] 제6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19 320 320 321 325 325 326 327 32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330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 330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333
제15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333
제16조 【특약의 무효】	— 334
제17조【회사의 보장개시】	— 33 5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 336
제19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336
제20조 【특약의 갱신】	— 33 6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 33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338
제22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338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 339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340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340
제26조 【해약환급금】 ——————————	— 341
제27조【배당금의 지급】	— 342
제7관 기타사항	- 342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343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윰 계산	347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_C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48
제1조【목적】	- 348
제2조 【용어의 정의】	— 34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348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348
제4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350
제5조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하7치료'의 정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358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358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 358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359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361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15조 【특약의 무효】	- 362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363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9조 【특약의 갱신】	- 364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366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366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367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368
제25조 【해약환급금】 ————————	369
제26조【배당금의 지급】	369
제7관 기타사항	369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369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370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372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 _C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81
제1조【목적】	381
제2조 【용어의 정의】	38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81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제4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384
제5조【'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정의】————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38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390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394
제18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 39 4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 39 6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397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397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 398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398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399
제25조 【해약환급금】 ————————————————————————————————————	 400
제26조【배당금의 지급】	— 400
제7관 기타사항	- 400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400
제7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40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401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405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 405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윰 계산	- 406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_C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407
제1조 【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40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407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407
제4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410
제5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11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41 5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 415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416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41 8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15조 [특약의 무효]	
제16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9조 [특약의 갱신]	— 421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423
제21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세이라 국국의 에서 못 에라된다	삼 등424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424
	425
제25조【해약환 급금 】 ————	426
제26조【배당금의 지급】	426
제7관 기타사항	426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426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427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	-
	T
	431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 432
선지급서비스	특약 약관
제1관 보험금의 지급	433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정】 433 정】 433 험사고】 434 - 434] 434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정】 433 정】 433 험사고】 434 - 434] 434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정】 433 정】 433 험사고】 434 434] 434 434 435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정】 433 정】 433 험사고】 434 - 434] 434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8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제9조 【회사의 보장개시】 —	생] 433 정] 433 험사고] 434 - 434] 434 - 435 - 435 - 435 - 436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8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제9조 【회사의 보장개시】 —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	생] 433 정] 433 험사고] 434 434 434 435 435 435 436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8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제9조 【회사의 보장개시】 —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 제11조 【특약 내용의 변경】 —	생] 433 정] 433 험사고] 434 1 434 1 435 435 435 435 436 436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8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제9조 【회사의 보장개시】 —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 제11조 【특약 내용의 변경】 —	생] 433 정] 433 험사고] 434 434 434 435 435 435 436

제3관 보험료의 납입		- 436
제13조【특약 보험료의	의 납입】	- 436
제14조【해지된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	- 43 6
제15조【계약자의 임	의해지】	- 437
제5관 기타사항		- 437
제16조【주계약에 사		
제17조 【다른 특약의	취급】 ————	-438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438
지정	제3관 보험료의 납입 436 제13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436 제14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436 제14관 특약의 해지 437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437 제15조 [기타시항 437 제16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취] 437 제17조 [다른 특약의 취급] 438 제18조 [주계약 약만 규정의 준용] 43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판 제1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39 제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39 제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39 제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439 제2판 특약의 성립과 유지 440 제3조 [적용대상] 440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440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440 제3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440 제4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440 제4조 [부험금의 청구] 440 제4조 기타시항 440 제4관 기타시항 440 제4관 기타시항 441 제7조 [주계약 약만 규정의 준용] 441	
제1관 지정대리청구인	<u> </u>	- 439
제1조【지정대리청구연	인의 지정】	- 439
제2조【지정대리청구인	인의 변경지정】	- 439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440
제3조【적용대상】—		- 440
제4조【특약의 성립 5	및 소멸】 	- 440
제3관 보험금 지급 등	등의 절차	- 440
제5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	- 440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440
제4관 기타사항		- 441
제7조 【주계약 약관 -	구정의 준용 】	- 441
71101/ LIG\7" : 1		4.40
ਾਲਂ 고객정보 취급방	침	445

가나다 순 특약 색인

다빈치로봇암수술특약 갱신형,무배당 약관	- 319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 433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_H 약관	- 149
암납입면제특약 주계약,무배당 약관	- 103
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_H 약관	- 12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439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I_C 약관	- 205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I_C 약관	- 34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 _C 약관	- 274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_H 약관 —	- 239
플러스항암방사선 · 약물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I_C 약관	– 17 8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I_C 약관	- 381
항임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갱신형 무배당 C 약관 ————	- 407

보험용어 해설

1. 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 정한 것

2.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 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12.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369뉴테크NH암보험 |무배당|_2404 주계약 약관 [1형(일반가입형), 2형(간편가입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 LICI.

예)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얼마인가요?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0원×10%)]×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 LIL
- 다.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합니다.
 - 다. 암보장개시일
 - (1)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계약을 부활(효

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라. 연간 :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 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 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자동연장보험기간

- 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동연장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나. 자동연장부험기간의 부험가입금액은 초과적립액을 일시납부험료로 하여 부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1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 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 가. 보험기간 중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암수술 자금, 암 CT 검사급여금, 암 PET 검사급여금, 암 MRI 검사급여금, 암 초음 파 검사급여금 및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 야
 - 나.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적립계약
 -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에서 정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적립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

- 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를 '보장보험료', 적립계약의 보험료를 '적립보험료'라 하며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따라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39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른 인출(이하 '중도인출'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계약자적립액'이란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산출방법서'에 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⑤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장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와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액이 있는 경우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은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⑥ '초과적립액'이라 함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장계약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장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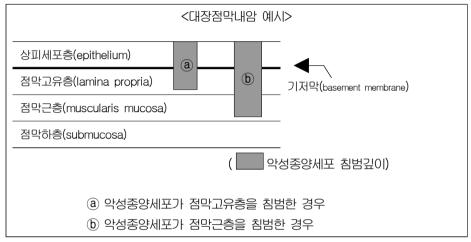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LICE.



- 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갑상선임'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v)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임', '갑상선암'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 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경계성종양** :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 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동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해당분야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관리 하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 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치료를 직접목적으로'란 피보험자가 해당 질환을 제거하거나 해당 질환의 증식 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 또는 질환의 성장으 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까지는 포함 하지만, 해당 질환이나 해당 질환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 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

제3조(의류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 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 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 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재(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 (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 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은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이 계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 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⑤ 이 계약에서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 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의료법 제54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 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항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를 둔다.
- (7)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경 BLOCK** : 지각신경이나 자율신경에 국소마취제나 신경파괴제를 주입하 여 신경경로의 일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수술시 마취나 통증의 치료. 혈액순 환 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

제6조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자기 공명영상 (MRI) 검사'및 '초음파 검사'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자 기공명영상(MRI) 검사'및 '초음파 검사(Ultrasonography)'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후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각각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자기공명영 상(MRI) 검사 및 초음파 검사(Ultrasonography)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PET-CT와 PET-MRI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포함되며, 각각 전산화단층촬영 (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제외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검사: X-선을 인체에 투과한 후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의 단면영상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 영상을 얻는 영상검사법을 말합니다.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 양전자를 방 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 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을 말합니다. 촬영 방법에 따라 PET-Scan. PET-CT, PET-MRI가 있습니다. PET-CT 검사는 PET 검사장비에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 장비를 장착한 이중 영상진단법 이며, PET-MRI 검사는 PET 검사장비에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장비를 장착한 이중 영상진단법입니다.
-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 강한 자기장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는 검사법 을 말합니다.
- 초음파 검사(Ultrasonography):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음파의 일종)를 인체에 투과시킨 후 반사되는 초음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는 검사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이전 검사라 하더라도, 그 검사 결과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내지 제4조('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의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분류표'(별표7 참조)에 해당하는 진 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 준」 고시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및 별표3(실시조건)에 근거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에서 실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 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암수술자금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암수 술자금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

-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을 때(연간 1회): 암 CT 검사급여금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았을 때(연간 1회):암 PET 검사급여금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을 때(연간 1회) : 암 MRI 검사급여금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연간 1회) : 암 초음파 검사급여금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를 받았을 때(연간 1회) : 급여 특정NGS 유전자패널검사급여금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 9. 피보험자가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다만,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에 대하여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암수술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6호의 암 CT 검사급여금, 암 PET 검사급여 금, 암 MRI 검사급여금 및 암 초음파 검사급여금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이전검사라 하더라도, 그 검사 결과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검사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④ PET-CT 검사 및 PET-MRI 검사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에 포함되고 각 각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제외되므로. PET-CT 검사 또는 PET-MRI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암 CT 검사급여금과 암 MRI 검사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제6항에서 정한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적 립액에서 초과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호 및 제27조(계약의 소멸)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⑦ 자동연장보험기가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제8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9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 피보험자가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자살한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 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mark>심신상실</mark>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지체 없이**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일이 없이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전산화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서, PET검사결과지,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따라 보험금 등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 니다.
- 정당한 사유: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u> 보험금</u>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한함)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예시]

보험금을 3년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3회)받지 않고 일시에 받 는 경우

- 보험금: 9천만원(매년 3천만원) - 지급일 : 2023년 7월 1일

- 평균공시이율: 2.0% 가정

	지글사유 발생 일자	실제 지급일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 금액
2	2023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3천만원
2	2024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3천만원÷(1+평균공시이율 2.0%) = 29,411,764원
2	2025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총	액	88,246,827원

※ 평균공시이율 2.0%는 예시를 위한 이율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1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 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음성녹음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 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는 계약자를 보험수 익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 결 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17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함 LIL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연대책임이라** : 2인 이상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되. 어느 1인 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 어. 계약자가 2인인 보험계약에서 각 계약자는 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보험회 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2인 중 1인이 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다른 1인도 그 1인이 납입한 금액만큼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 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 습니다.
 - 1. 회사가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 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 ④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 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지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 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에 의 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3만원형: 1형(일반가입형) / 2형(간편가입형) ·6만원형: 1형(일반가입형) / 2형(간편가입형) ·9만원형: 1형(일반가입형) / 2형(간편가입형)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 **보험가입금액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 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

- 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 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 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 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 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 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 ⑦ 제6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⑧ 제6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가입금액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2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 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청약의 철회 :**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 험 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mark>전문금융소비자</mark>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 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 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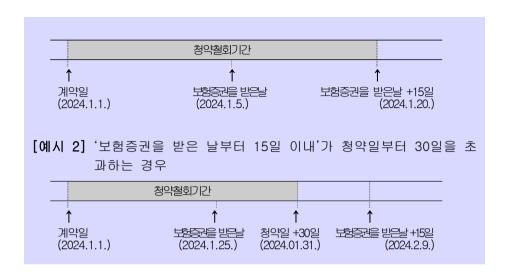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8. (생략)
 -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 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 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 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생략)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청약철회기간 예시]

[예시 1]'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청약일부터 30일을 초 과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후에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 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 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 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 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

- 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에 의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1.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2.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3.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6.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7.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8.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9.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약관용어 설명]

- **전자서명법 :** 디지털적인 수단으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것을 도장을 찍은 종 이 등 기존 서류에 대해 한 서명이나 사용인감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법률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에 의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 '상품공시실' 내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2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2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료의 납입방법
 - 2. 계약자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6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 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나 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금 및 보험료 변경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정산합니다.

- **보험나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연계약해당일로합니다.

예) 계약일: 2020년 2월 29일

- 연계약해당일: 매년 2월 29일이 연계약해당일이나, 2021년 2월 등 해당월의 계약해당일(29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2021년 2월 28일)을 연계약해당일로합니다.

<u> [보험나이 계산 예시]</u>

생년월일: 1993년 10월 2일

예1) 2019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예2) 2019년 11월 13일에 가입할 경우

2019년 4월 13일2019년 11월 13일- 1993년 10월 2일- 1993년 10월 2일

만 25년 6개월 11일 만 26년 1개월 11일 ⇒ 보험나이 26세 ⇒ 보험나이 26세

제27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초과적립액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지급절차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LICI.
 -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
 - 2.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 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1년 1월 1일에 최초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개시일: 2021년 1월 1일 암보장개시일: 2021년 4월 1일

(2021년 1월 1일 + 90일 = 2021년 4월 1일)

제2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0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 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 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 Cł.

[약관용어 설명]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라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 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 비스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 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 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 체결시점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 서(납입안내장)을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는 제15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 릅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 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 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 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4항 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

제33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
- **담보권실행**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증력회복) 청약을 승낙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 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3(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가 철회되면 그 철회시점 이후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 LICt.
- ③ 위 서면동의 철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키거나 그 발생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증가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LICI.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7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 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 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 Cł.
- ④ 회사는 부험수익자에게 부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

제39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2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 출신청시점 적립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적립계약의 계약자적 립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후 적립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연간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인출시점까지의 중도인출금액 총 합계는 OIDI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연도** : 해당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 ex) 계약일이 2023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 월 14일까지 1년
-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액은 최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계약자적립액 인 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인출 이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 리되는 이자, 를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만원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제40조【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 LICE.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 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 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 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 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 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 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 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다.
-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 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 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 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Cł.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 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 안을 제시 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 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 받지 못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 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 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예시 :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제44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 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4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 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 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 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안내 자료** :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및 고객제안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약관용어 설명]

- **책임 있는 사유 :**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 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 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 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 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 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삭제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 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 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 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 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 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 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 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 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32조 제6항 각 호의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 집 ·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 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 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 용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 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 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 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률을 말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형(일반가입형)/2형(간편가입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거나,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대장점 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암수술자금 지급사유 발 생시 50% 삭감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다만, 계약일부터1년 미만 에 암수술자금 지급사유 발 생시 50% 삭감지급)
암 CT 검사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을 때	5만원 (연간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 감지급)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 PET 검사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방출단총촬영(PET) 검사'를 받았을 때	1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 감지급)
암 MRI 검사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을 때	1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 감지급)
암 초음파 검사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1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 감지급)
급여 특정 NGS유전자 패널검사급 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를 받았을 때	5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삭 감지급)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 (단,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초과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 주) 1.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수술자금, 암 CT 검사급여금, 암 PET 검사급여금, 암 MRI 검사급여금, 암 초음파 검사급여금 및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 자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 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에 의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5.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계약자적립액'이란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7.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8. '초과적립액'이라 함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 자동연장보험기간[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자동연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주)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초과적립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자동연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C15-C26 ^{₹3)}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30-C39 C40-C41
4. 글 봊 선물인물의 작성인성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0-C41
5. 피구의 작성 목작용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0. 궁피성 및 선조적의 확성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45-C49 C50
7. ㅠ링의 작성선명을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9. 음성 영역기원의 학생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0. 요포기 학생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1. 근, 되 및 8구선3세8의 기다 구군의 학8선3일 12. 부사의 악성시생물	C09 C72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1
21 골수성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임' 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 정의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4. 제자리 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 암종 6. 유방의 제자리 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00 D01 ^{≈2)} D02 D03 D04 D05 D06 D07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 정의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D37 D38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대군미신의 영웅양식 물병 또는 미영의 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D47
신생물	(D47.1, D47.3,
다이크	D47.4, D47.5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 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7]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코 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고형암 -Level I	CB003
2.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고형암 -Level II	CB004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혈액암 -Level I	CB005
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혈액암 -Level II	CB006

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인 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른 '급여 특정NGS유전자패 널검사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법령 개정으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인 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 경 직전의 관련법령 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별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암수술자금, 암 CT 검사급여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암 PET 검사급여금, 암 MRI 검사급여금, 암 초음파 검사급여금, 급여 특정NGS유전자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대 독생(83유인자 패널검사급여금 사망보험금 (제8조 제1호, 제2호,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제6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만기보험금 (제8조 제8호)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제37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 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제43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암납입면제특약 |주계약,무배당|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피보험 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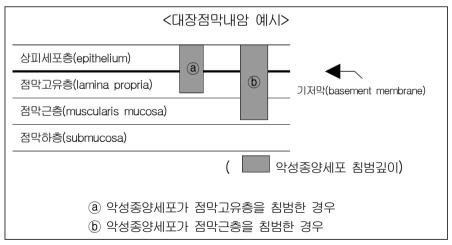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약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암보장개시일
 - (1)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계약을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2 관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⑤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비능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별표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참조)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함 LICI.

제6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결과 제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7조 【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일 예시]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 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 인 10/14(월)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지 못하고 보험 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 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별표 5〕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보험료 납입면 제 예정일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 예 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료 납입면 제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 는 경우
- 6.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 지급사 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정당한 사유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 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 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했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료 납입면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반대증거**: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료 납입면제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 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 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기능
 - 2.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2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기능
- ③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 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횐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 Cł.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3항 제3호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3항 제3호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료 납입면 제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 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mark>실종선고</mark>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부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 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2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주계약의 감액등으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 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③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주계약의 보험료가 변 경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주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주계약에 따라 산출된

부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하여 회 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증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 릅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 력회복) 청약 포함)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화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 립니다.

제2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 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2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료를 납입면제 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밥 에 띠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2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 1형(일반가입형) / 2형(간편가입형)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보험료 납입면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주) 1.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할인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건부특약으로 보험료 가 할증된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 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 여부를 판단 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1. 골수섬유증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00-C14 C15-C26 ^{₹3)}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료를 납입면제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보험료 (제4조)	보험료 납입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보험료 납입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2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가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 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 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H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간편가입형11), 3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1종(갱신형) 또는 2종(비갱신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종에 한하여 적용합니 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부헛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부헠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부헠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갱 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악보장개시일
 - (1) 1종(갱신형)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2종(비갱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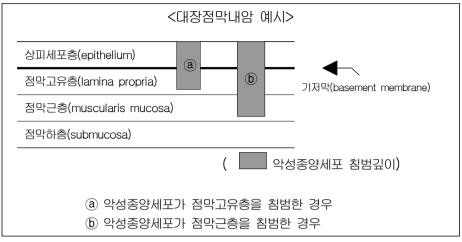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 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나. 갱신일 : 1종(갱신형)에서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류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이 계약에 있어서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제2항에서 정의한 '기타피부암'
 - 2. 제4항에서 정의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 3. 제5항에서 정의한 '대장점막내암'
 - 4.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증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수질성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 머지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 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 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 립선의 악성 신생물(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일반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중 제6항에서 정의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⑧ '암(중증 감상선암 제외)'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중증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중증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중증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제8항 내지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중증 갑상선 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 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 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부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 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일반암진단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아래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 신형)에 적용되고 제4항은 같은조 같은 항의 2종(비갱신형)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각 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 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이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일반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 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4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제6항에 의한 진단확정으로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특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5항 제3호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제4항에 의한 진단확정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결과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mark>심신상실</mark>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 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 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정당한 사유**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LICI.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Cł.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부헠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부헝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 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LICE.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 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 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일 경우에는 2종(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1. 1종(갱신형)
 - 2. 2종(비갱신형)
- ③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가능
 - 2. 주계약이 「간편가입형 II」인 경우, 이 특약의 2형(간편가입형 II)만 선택 가능
 - 3.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3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1종(갱신형)을 선택하여 이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 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 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 LICI.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제5항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7)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⑧ 제7항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 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 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 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만, 1형(간편가입형) 또는 2형(간편가입형 II) 가입시에 한 함)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

- ※ 아래 제2항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적용되고. 제1항 및 제3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7항에서 정한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

-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특약의 갱신】

- ※ 아래 각 항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을 선택했을 경우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약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 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8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①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①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 ※ 아래 제2항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7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 아래 제4항은 제12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적용되고, 나머지 각 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 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 릅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 립니다.

제2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 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2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종(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일반암진단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디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시유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주)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 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하며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 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5 피부험자가 이 특약의 부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비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일반암진단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시유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주) 1.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 단 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하며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 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 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임'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 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4)}
13.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9.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20.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2. 골수섬유증	D47.4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 서 정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감상선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일반암 진단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 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 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평균공시이 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 H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간편가입형11), 3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1종(갱시형) 또는 2종(비갱시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부족에 한하여 적용합니 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갱 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1) 1종(갱신형)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2종(비갱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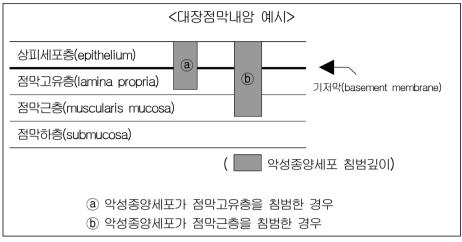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 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나. 갱신일 : 1종(갱신형)에서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 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이 계약에 있어서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제2항에서 정의한 '기타피부암'
 - 2. 제4항에서 정의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 3. 제5항에서 정의한 '대장점막내암'
 - 4.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증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수질성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 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 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LICI.



- ⑥ 이 특약에서 '전립선임'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Cł.
- (7) '전립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전립선암'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8)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 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 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 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 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제4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 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및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 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전립선암진단보험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 우에 한함)
-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소액암진단보험금 (다만.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아래 제2항 , 제3항, 제8항 및 제9항은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 의 1종(갱신형)에 적용되고 제4항은 같은조 같은 항의 2종(비갱신형)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각 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 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전립선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 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 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 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전립선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이전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전립선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 의한 진단확정으로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5항 제3호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제5항에 의한 진단확정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⑦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18조(특약의 갱 신)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특약의 보험기간 중 '전립선암'. '기타피

- 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부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진단보험금의 질병과 동일한 지 급사유인 경우(이미 지급된 진단보험금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결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에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 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 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정당한 사유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LICI.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 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봄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 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 이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 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일 경우에는 2종(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1. 1종(갱신형)
 - 2. 2종(비갱신형)
- ③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가능
 - 2. 주계약이 「간편가입형I」인 경우, 이 특약의 2형(간편가입형I)만 선택 가능
 - 3.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3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1종(갱신형)을 선택하여 이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 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 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 LICI.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5항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⑧ 제7항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8조(보

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기일 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 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

-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 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만, 1형(간편가입형) 또는 2형(간편가입형 II) 가입시에 한 함)

제15조【회사의 보장개시】

- ※ 아래 제2항은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적용되고, 제1항 및 제3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6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부험수익자에게 부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부험 수익자는 변경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특약의 갱신】

- ※ 아래 각 항은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을 선택했을 경우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약관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 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부험유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7)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 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 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⑫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 ※ 아래 제2항은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8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 아래 제4항은 제13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적용되고, 나머지 각 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 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 릅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 립니다.

제2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 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 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2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종(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함)	100만원 (디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시유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소액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 시유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주) 1. 보장개시일(전립선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 약 해당일 전일'이전에 이 특약의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소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3.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 금를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비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함)	1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 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소액암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시유 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주) 1. 보장개시일(전립선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이전에 이 특약의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2. 소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3.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 금를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 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주4)}
13.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9.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20.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2. 골수섬유증	D47.4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계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 서 정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지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주2)}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 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 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주)2}	D47
	(D47.1,
	D47.3,D47.4,
	D47.5 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만성 골수증식 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 성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소액암진단 보험금 (제5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 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 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 초과 기간 : 평균공 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플러스항암방사선 · 약물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 | C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 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 갱신일 :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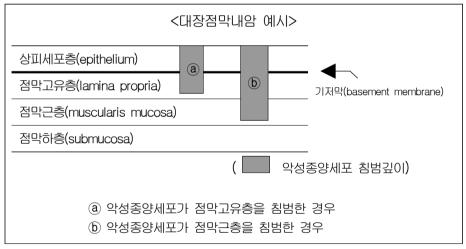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LICI.



- 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흑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갑상선악'의 지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흑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7)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 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 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 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 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 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 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 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자금

- 가.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 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항암방사선치 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나.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 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타피부암 또는 '감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자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의 경우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여 항암방사선・약물치료자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하나에 해당하더 라도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 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항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 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 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 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

- 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계약자와 회사가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결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항암방사선치료확인서, 항암약물치료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 (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 LIL
- 정당한 사유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LICI.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 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 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 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 험기간 만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 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가능
 - 2.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2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기능
- ④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 급금을 받은 경우
 -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3.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4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 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 다. 다만,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 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 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3.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 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⑦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⑧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 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⑨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⑩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⑪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⑫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mark>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mark>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름 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 니다.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 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5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6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 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최초 1회한)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각각 최초 1회한)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

- 주) 1.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자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 당하는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의 경우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여 항암방사선・약물치료자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 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3.'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 우(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 6. '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7.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 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임'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 Cł.
- 9.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1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단합 LICI.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지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항암방사선 • 약 물치료자금 (제6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 C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부헛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부헠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부헠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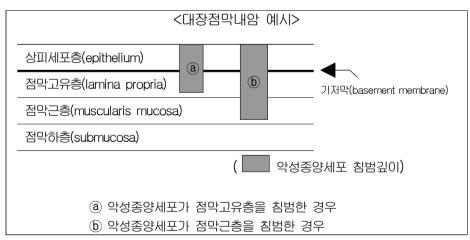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 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 갱신일 :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감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LICt.



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흑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7)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흠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한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 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 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또는'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 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 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특정면역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 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 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

- 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이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1.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2. 항체약물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3. 카티(CAR-T. 키메리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 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 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항체약물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항원 단백 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카티(CAR-T. 키메라항 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 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 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기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검색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 관에 한함)'확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 약제기준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항암화학요법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특정면역항암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면역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부록 1>에 기재하고 있습 니다. 다만. <부록 1> 상 열거되어 있더라도 투약 처방 시점에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의약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 <부록 1>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면역항암제' 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이외에 추 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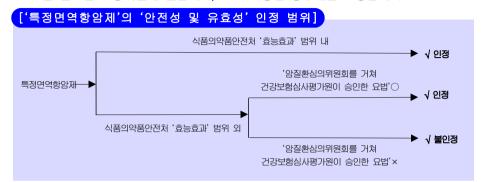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 장점막내임'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임'. '기타피부임'. '갑상선임' 또는 '대 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제14조(특약의 성 립 및 소멸)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이후에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 합니다.
- ⑤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 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또는'대장점막내암'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특정면역항 암약물허가치료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⑦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면역항암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⑧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면 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5조('특정면역항암제'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 로 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결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에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등)
 - 3.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 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지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ㅁ. 기타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투약기록지 및 진료기록지
- 다.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진료기록지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정당한 사유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LICI.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 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괴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 험기간 만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 Cł.
- ③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가능
 - 2.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2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④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 급금을 받은 경우
 -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 제4호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4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 다. 다만,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 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 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 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 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 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②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름 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 니다.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 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5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6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특정면역 항암약물 허가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 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 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면역 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시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 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1호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 는 경우의 '암부장개시일'은 부활(증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8.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9.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 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제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임'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을 최초 1회 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10.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 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부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1.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면역항암제' 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 조('특정면역항암제'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1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부위(최 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

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특정면역 항암약물 허가치료자금 (제6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부록 1]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① 아래 안내장은 보험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② 아래 '특정면역항암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정면역항암제'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 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 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 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용기전 분류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세미플리맙 Cemiplimab	리브타요주(세미플리맙)
면역관문 억제제	도스탈리맙 Dostarlimab	젬퍼리주(도스탈리맙)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더발루맙)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이 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이 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작용기전 분류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옵디보주100mg (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Nivolumab	옵디보주20mg (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 (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
	트레멜리무맙 Tremelimumab/Tremelimu mab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브렌툭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엔포투맙베도틴 Enfortumab Vedotin	파드셉주20밀리그램 (엔포투맙베도틴)
		파드셉주30밀리그램 (엔포투맙베도틴)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4.5밀리그램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항체약물 증항체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중합체 항암치료제	폴라투주맙 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Trastuzumab deruxtecan	엔허투주100mg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사시투주맙고비테칸 Sacituzumab govitecan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
카티 항암치료제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실타캅타젠오토류셀 Ciltacaptagene Autoleucel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

[부록 2]

특약 가입자를 위한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 관련 안내사항

아래의 안내사항은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에 대한 일반 적인 내용으로, 신규 담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및 법령상의 설명의무 이행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1)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항암약물치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 "면역항암제"란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항암제)로서 "특정면역항암제"란 아 래 3가지에 해당하는 "면역항암제"를 말합니다.
 - ①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② 항체약물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③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하는 기존 항암약물치료에 비해 생존 율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Q2)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는 부작용이 없는 건가요?

- ☞ 어떤 치료 방법이든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도 기 존 항암약물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경우에 따라 특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환자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활발해지면서 면 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면역매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면역항 암제의 부작용은 크게 주입 관련반응. 피부. 위장관계. 내분비계. 폐. 신장. 안과계. 신경계. 심장 관련 부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중 피부 부작용은 가장 먼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처방 전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은 반드시 전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투약하여야 합니다.

Q3) 암종별로 어떤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 암종별로 주로 처방되는 특정면역항암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 표적인 암종 및 성분·의약품만을 기재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정면역 항암제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의종류	대표 성분명(국문·영문)	대표 의약품명(국문·영문)
유방암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
ποσ	Trastuzumab emtansine	Kadcyla
방광암	아테졸리주맙	티쎈트릭
000	Atezolizumab	Tecentriq
B세포 급성 림프성	티사젠렉류셀	킴리아
백혈병(ALL)	Tisagenlecleucel	Kymriah
미만성 거대 B세포	티사젠렉류셀	킴리아
림프종(DLBCL)	Tisagenlecleucel	Kymriah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 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 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 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모든 환자가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해당 특약에서 특정면역항암제의 사용범위라 할 수 있는 '적응증(대상이 되는 암종. 치료단계 등)'은 항암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관장하는 두 국가기 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정한 기준을 기초 로 하여 정하고 있으며, 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면역항암제가 치료시점의 적응증 범위 이내에서 처방 및 투여되어야 합니다.

Q5) 특정면역항암제의 적응증(대상이 되는 암종. 치료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어떻 게 되나요?

☞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시점 이후 적응증(대상이 되는 암종, 치 료단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치료시점의 적응증 범위 이내에서 시행된 특정면역 항암약물치료에 대해서만 이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 | 갱신형 비갱신형 무배당 | H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간편가입형 | 1), 3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1종(갱신형) 또는 2종(비갱신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종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부형회사(이하 '회사'라 한니다) 사이에 제8조(부형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부형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 Cł.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1) 1종(갱신형)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2종(비갱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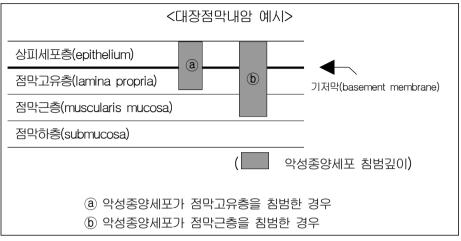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 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그 부활청약을 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나. 갱신일 : 1종(갱신형)에서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측(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니다.



- 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흑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7)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임' 및 '대장점막내임'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부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한로 사 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 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 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 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의한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 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 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동 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해당분야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치료를 직접목적으로'란 피보험자가 해당 질환을 제거하거나 해당 질환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 또는 질환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까 지는 포함하지만, 해당 질환이나 해당 질환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 한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 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 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 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6조 【'암 등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 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 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 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의 직접적인 치료'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 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의료법 제54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 워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 위원회를 둔다.
- (7)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략)
 -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 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 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이하생략)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규정 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 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 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 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 77 조 제 1 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 1 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 년마다 제 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7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 ①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변경으로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 상급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진료과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등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 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 포함)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 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 가.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간30회에 한함)
 - 나.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간30 회에 한함)

2.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 가.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가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 나.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부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약관용어 설명]

- 보험연도 : 해당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 ex) 계약일이 2023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아래 제2항은 제16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의 1종(갱신형)에 적용됩니다. 나 머지 각 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 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Cł.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 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 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지급 예시】

구분	'암'으로 상급종합병원 1회 통원시	'암'으로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1회 통원시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1)	지급	해당없음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②)	지급	지급

예시1) '암'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회 통원시

- →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1) 및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2) 지급
- 예시2) '암'으로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1회 통원시
 -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2) 지급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결과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mark>심신상실 :</mark>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통원치료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 니다.
- <mark>정당한 사유 :</mark>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함 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 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 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LICI.
-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 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일 경우에는 2종(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1. 1종(갱신형)
 - 2. 2종(비갱신형)
- ③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가능
 - 2. 주계약이 「간편가입형Ⅱ」인 경우, 이 특약의 2형(간편가입형Ⅱ)만 선택 가능
 - 3.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3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종(갱신형)을 선택하여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계 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21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 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부험자가 부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제5항 제3호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7) 제5항 제3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11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mark>종선고 :</mark>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 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7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 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만, 1형(간편가입형) 또는 2형(간편가입형 11) 가입시에 한 함)

제18조【회사의 보장개시】

- ※ 아래 제2항은 제16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적용되고, 제1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1조 【특약의 갱신】

- ※ 아래 각 항은 제16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을 선택했을 경우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6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 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 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 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 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제9조(부헠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부헠로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에 따 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 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⑫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2조【특약의 보험기간】

- ※ 아래 제2항은 제16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한하여 적 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21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 아래 제4항은 제16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 제1호의 1종(갱신형)에 적용되고. 나머지 각 항은 1종(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8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릅 LICE.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 니다.

제2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8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2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1일 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간30회에 한함)	10만원 (통원 1회당)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1일 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간 30회에 한함)	10만원 (통원 1회당)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2만원 (통원 1회당)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2만원 (통원 1회당)

- 주) 1.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 니다.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1종(갱신형)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1종(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 여부를 판단 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핵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지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임' 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4. 제자리 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 암종 6. 유방의 제자리 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00 D01 ^{≈2)}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 (D47.1, D47.3,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경계성종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 성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제7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 C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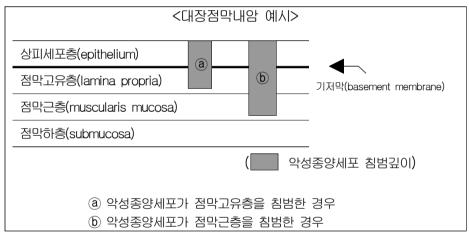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 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 갱신일 :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LICI.



- ⑤ '암'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8)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부험자가 '악'.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 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 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 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 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표적항암제'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정」에 의하여 의약품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 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약관용어 설명]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 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세포독성 항암제** : 세포독성 항암제란,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DNA와 RNA의 합성과정 및 유사분열을 방해하 거나, DNA 분자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제를 말합

니다.

-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라.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능 력을 변화(증강)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때 면역 요법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중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악제'를 안전성과 유형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검색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 관에 한함)'확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 약제기준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항암화학요법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표적항암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표적 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부록 1>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 만. <부록 1> 상 열거되어 있더라도 투약 처방 시점에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의약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부 록 1>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 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 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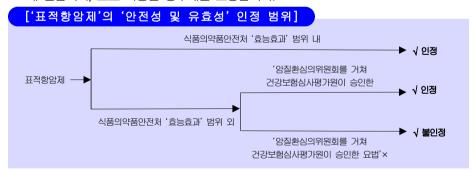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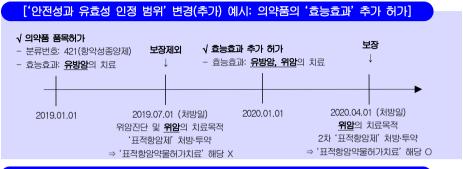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제14조(특약의 성 립 및 소멸)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이후에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 합니다.

- (5)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 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 물허가치료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7)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 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 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⑧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적항암제'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 적용 후 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결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mark>심신상실 :</mark>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등)
 -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ㅁ. 기타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투약기록지 및 진료기록지
 - 다.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진료기록지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 니다.
- <mark>정당한 사유 :</mark>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 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LICI.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 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 험기간 만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 Cł.
- ③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기능
 - 2.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2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④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 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 제4호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4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 다. 다만,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부형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형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mark>종선고</mark>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 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 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부험자가 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 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부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 LICt.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 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 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②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가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릅 LICt.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 LICI.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 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5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6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 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 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시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 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1호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 Γŀ
 -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증력회복)하 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8.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9.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 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제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임'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을 최초 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 10.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 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 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1.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 적항암제'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 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1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부위(최 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 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표적항암약물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허가치료자금 (제6조)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 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부록 1]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① 아래 안내장은 보험약관 제5조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② 아래 '표적항암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 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 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 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	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	Abemaciclib	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2	아칼라브루티닙 Acalabrutinib	칼퀀스캡슐100밀리그램(아칼라브루티닙)
		지오트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3	아파티닙이말레산염 Afatinib Dimaleate	지오트립정3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트립정4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4	애플리버셉트 Aflibercept	잘트랩주25mg/mL(애플리버셉트)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알렉티닙염산염(미분	
5	화) Alectinib Hydrochloride Micronized	알레센자캡슐150밀리그램(알렉티닙염산염)
		피크레이정50밀리그램(알펠리십)
6	알펠리십 Alpelisib	피크레이정150밀리그램(알펠리십)
		피크레이정200밀리그램(알펠리십)
7	아미반타맙 Amivantamab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8	레날리도마이드무수물 Anhydrous Lenalidomide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애시미닙염산염	셈블릭스정20밀리그램(애시미닙염산염)
9	Asciminib Hydrochloride	셈블릭스정40밀리그램(애시미닙염산염)
10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11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12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타정1밀리그램(엑시티닙)
12		인라이타정5밀리그램(엑시티닙)
13	벨주티판 Belzutifan	웰리렉정(벨주티판)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온베브지주(베바시주맙)
14	베바시주맙 Poveoizumeh	자이라베브주(베바시주맙)
	* Bevacizumab	아림시스주(베바시주맙)
		베그젤마주(베바시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15	블리나투모맙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 35마이크로그램(블리나투모맙, 유전자재조합)
16	보르테조밉일수화물 Bortezomib Monohydrate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일수화 물)
17	보르테조밉삼합체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삼합체)
	Bortezomib Trimer	테조벨주(보르테조밉삼합체)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프로테조밉주(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조밉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조밉주1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프로테조밉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보수티닙일수화물	보술리프정100밀리그램(보수티닙일수화물)
18	Bosutinib	보술리프정400밀리그램(보수티닙일수화물)
	Monohydrate	보술리프정500밀리그램(보수티닙일수화물)
19	브렌툭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알룬브릭정30밀리그램(브리가티닙)
20	브리가티닙 Brigatinib	알룬브릭정90밀리그램(브리가티닙)
	5119411112	알룬브릭정18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카보잔티닙(S)-말산염	카보메틱스정60밀리그램(카보잔티닙)
21	Cabozantinib	카보메틱스정40밀리그램(카보잔티닙)
	(S)-malate	카보메틱스정2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 화물	타브렉타정150밀리그램(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 물)
22	Capmatinib Hydrochloride Hydrate	타브렉타정200밀리그램(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 물)
00	카르필조밉	키프롤리스주60밀리그램(카르필조밉)
23	Carfilzomib	키프롤리스주30밀리그램(카르필조밉)
24	세미플리맙 Cemiplimab	리브타요주(세미플리맙)
25	세리티닙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150밀리그램(세리티닙)
26	세툭시맙	얼비툭스주 5mg/mL (세툭시맙)
_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Cetuximab	
27	실타캅타젠오토류셀 Ciltacaptagene Autoleucel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
28	크리조티닙	잴코리캡슐200밀리그램(크리조티닙)
20	Crizotinib	잴코리캡슐250밀리그램(크리조티닙)
29	다브라페닙메실산염(미분화)	라핀나캡슐50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Dabrafenib Mesylate Micronized	라핀나캡슐75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비짐프로정15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30	다코미티닙수화물 Dacomitinib Hydrate	비짐프로정45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 Jaconnanio Injurate	비짐프로정30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31	다라투무맙 Daratumumab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Daratumumab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
		스프라이셀정7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50밀리그램(다사티닙)
32	다사티닙 Dasatinib	스프라이셀정20밀리그램(다사티닙)
	Basatimis	스프라이셀정10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80밀리그램(다사티닙)
33	도스탈리맙 Dostarlimab	젬퍼리주(도스탈리맙)
34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더발루맙)
35	엔코라페닙 Encorafenib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엔코라페닙)
26	엔포투맙베도틴	파드셉주20밀리그램(엔포투맙베도틴)
36	Enfortumab Vedotin	파드셉주30밀리그램(엔포투맙베도틴)
0.7	엔트렉티닙	로즐리트렉캡슐1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37	Entrectinib	로즐리트렉캡슐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발베사정3밀리그램(얼다피티닙)
38	얼다피티닙 Erdafitinib	발베사정4밀리그램(얼다피티닙)
	Liuaiiliiib	발베사정5밀리그램(얼다피티닙)
39	엘로티닙염산염	타쎄바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alal=5'/=='\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타쎄바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쎄바정25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팁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수출용)
		엘로쎄타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쎄타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Erlotinib	타쎄원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Hydrochloride	타쎄원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25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5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00mg(엘로티닙염산염)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리니토정10mg(에베로리무스)
40		에리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베로즈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베로즈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베로즈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41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 물(미분화) Fedratinib dihydrochloride monohydrate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이레사정(게피티니브)
42	게피티니브 Gefitinib	이레피논정(게피티니브)
		스펙사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레피사정(게피티니브)
		제피티닙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티닙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		0.01=5.1/==1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43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4.5밀리그램(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44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Gilteritinib fumarate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45	이브루티닙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이브루티닙)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 염)
	이매티닙메실산염 Imatinib Mesylate	케어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류코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류코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46		제이티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 염)
		글리마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로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 염)
47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 신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버호	성분명(국문 영문)	의약품명(국문)
CY	Inotuzumab	
	Ozogamicin	
48	18 이필리무맙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이필리무맙,유 전자재조합)
40	Ipilimumab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49	이사툭시맙 ISATUXIMAB/ISATUX IMAB	살클리사주(이사툭시맙)
		닌라로캡슐2.3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50	익사조밉시트레이트 Ixazomib Citrate	닌라로캡슐3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Mazoniib Onfato	닌라로캡슐4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51	라파티닙 디토실레이트 Lapatinib Ditosylate Monohydrate	타이커브정250밀리그램(라파티닙디토실레이트)
	라로트렉티닙황산염 Larotrectinib sulfate	비트락비캡슐25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염)
52		비트락비캡슐100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염)
		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
53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 수화물 Lazertinib Mesylate Monohydrate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레날도캡슐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Lenalidomide	레날도캡슐10mg(레날리도마이드)
54		레블리킨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Lenandonnide	레블리킨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킨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킨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킨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55	레날리도마이드반수화 물 Lenalidomide Hemihydrate	레블리미드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수화물 Lenalidomide Hydrate	레블리미드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56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5 7	렌바티닙메실산염	렌비마캡슐10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57	Lenvatinib Mesylate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58	롤라티닙	로비큐아정25밀리그램(롤라티닙)
50	Lorlatinib	로비큐아정100밀리그램(롤라티닙)
59	미도스타우린 Midostaurin	라이답연질캡슐25밀리그램(미도스타우린)
60	모보서티닙숙신산염 Mobocertinib Succinate	엑스키비티캡슐40밀리그램(모보서티닙숙신산염)
61	모가물리주맙 Mogamulizumab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
62	네라티닙말레산염 Neratinib Maleate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 물)
63	물 Nilotinib Hydrochrloride Monohydrate	타시그나캡슐15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 물)
		타시그나캡슐5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64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 화물 Niraparib Tosylate Monohydrate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 물)
	니볼루맙(유전자재조 합) Nivolumab (rDNA)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65		옵디보주2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66	오비누투주맙 Obinutuzumab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 유전자재조합)
67	올라파립 Olaparib	린파자캡슐5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15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100밀리그램(올라파립)
68	오시머티닙메실산염	타그리소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00	Osimertinib Mesylate	타그리소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입랜스캡슐75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125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100mg(팔보시클립)
		입랜스정75밀리그램(팔보시클립)
69	팔보시클립 Palbociclib	입랜스정125밀리그램(팔보시클립)
	T albociello	입랜스정100밀리그램(팔보시클립)
		알렌시캡슐75밀리그램(팔보시클립)
		알렌시캡슐100밀리그램(팔보시클립)
		알렌시캡슐125밀리그램(팔보시클립)
70	파조파닙염산염 Pazopanib	보트리엔트정4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	Hydrochloride	보트리엔트정2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71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
	페미가티닙 Pemigatinib	페마자이레정13.5밀리그램(페미가티닙)
72		페마자이레정9밀리그램(페미가티닙)
		페마자이레정4.5밀리그램(페미가티닙)
73	퍼투주맙 Pertuzumab	퍼제타주(퍼투주맙)
74	퍼투주맙,트라스투주 맙 Pertuzumab/Trastuzu mab	페스코피하주사600/600밀리그램(퍼투주맙/트라스 투주맙)
		페스코피하주사1200/600밀리그램(퍼투주맙/트라 스투주맙)
75	폴라투주맙 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76	포말리도마이드 Pomalidomide	포말리스트캡슐4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3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2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77	포나티닙 염산염 Ponatinib Hydrochloride	아이클루시그정1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 /		아이클루시그정4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78	프랄세티닙분무건조분 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레토캡슐100밀리그램(프랄세티닙)
79	라도티닙염산염 Radotinib	슈펙트캡슐2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 ,	Hydrochloride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80	라무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주10밀리그램/밀리리터(라무시루맙,유전 자재조합)
81	레고라페닙일수화물 Regorafenib Monohydrate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레고라페닙)
82	리보시클립숙신산염 Ribociclib succinate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리보시클립숙신산염)
	리툭시맙 Rituximab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83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
		트룩시마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룩소리티닙인산염 Ruxolitinib Phosphate	자카비정2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84		자카비정1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04		자카비정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85	사시투주맙고비테칸 sacituzumab govitecan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
86	셀리넥서 Selinexor	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
87	셀퍼카티닙 Selpercatinib	레테브모캡슐80밀리그램(셀퍼카티닙)
		레테브모캡슐40밀리그램(셀퍼카티닙)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88	실툭시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Siltuximab (Monoclonal Antibody, rDNA)	실반트주100밀리그램(실툭시맙, 유전자재조합)
		실반트주400밀리그램(실툭시맙, 유전자재조합)
89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Sorafenib Tosylate Micronized	넥사바정200밀리그램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소라닙정200밀리그램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90	소토라십 Sotorasib	루마크라스정120밀리그램(소토라십)
		수텐캡슐1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91	수니티닙말산염 Sunitinib Malate	수텐캡슐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Cuminib Malate	수텐캡슐50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92	타파시타맙 Tafasitamab	민쥬비주(타파시타맙)
93	탈라조파립토실산염 Talazoparib Tosylate	탈제나캡슐1밀리그램(탈라조파립토실산염)
		탈제나캡슐0.25밀리그램(탈라조파립토실산염)
94	테클리스타맙	텍베일리주153mg(테클리스타맙)
34	Teclistamab	텍베일리주30mg(테클리스타맙)
95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96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Tepotinib hydrochloride hydrate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탈리그로브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97		탈리그로브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50mg(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98	티라브루티닙염산염 Tirabrutinib hydrochloride	베렉스브루정80밀리그램(티라브루티닙염산염)
99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ш. –		OIOPIECA DEL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00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 _ 시드(미분화)	매큐셀정0.5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Trametinib Dimethyl Sulfoxide Micronized	매큐셀정2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허셉틴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허쥬마주15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쥬마주44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101	트라스투주맙	허셉틴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101	Trastuzumab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삼페넷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오기브리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삼페넷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투젭타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투젭타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102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Trastuzumab deruxtecan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103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104	트레멜리무맙 Tremelimumab/Trem elimumab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10E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100밀리그램(반데타닙)
105		카프렐사정300밀리그램(반데타닙)
106	베무라페닙고체분산체 Vemurafenib Solid Dispersions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
107	베네토클락스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10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1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5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108	자누브루티닙 Zanubrutinib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부록 2]

특약 가입자를 위한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치료 관련 안내사항

아래의 안내사항은 '표적항암제'및 '표적항암약물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으로, 신규 담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및 법령상의 설명의무 이행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1) 표적항암약물치료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항암약물치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여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는 약제를 "표적항암제"라고 하고, 이러한 "표적항암제"를 사용하여 치료하 는 것을 "표적항암약물치료"라고 합니다.
- ☞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하는 기존 항암약물치료에 비해 정상 세 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기존 치료법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 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Q2) 표적항암약물치료는 만능 치료법인가요?

- ☞ 표적항암약물치료는 몇몇 암종의 치료에서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지만 절대 만능 치 료법이 아닙니다.
 - ① 표적항암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가진 특정한 물질(분자)를 표적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치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이 특정한 물질(분자)를 표적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은 각 표적 항암제의 작용 기전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하기 위해 서는 각 표적항암제가 작용하는 특정 표적인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결 과 및 그 외 임상 정보 등을 고려하여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표적항암약물치료는 표적항암제 가격이 다른 일반항암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 가(高價)이므로 많은 치료 비용을 요합니다.
 - ③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 인 투약을 필요로 합니다.
 - ④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Q3) 모든 환자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암세포가 가진 특정 분자를 표적 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치료의 효과가 발현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암을 진단받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 특정한 표적 인자가 나타나는 환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습니다.
- ☞ 표적항암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의 처방은 치료를 통해 충분한 치료의 효과 가 기대되는 표적인자 보유 환자에게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암의 치료 선택 과정에 서 해당 전문의는 환자가 어떤 표적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방을 결 정할 수 있습니다.

Q4) 표적항암약물치료는 부작용이 없는 건가요?

- ☞ 어떤 치료 방법이든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도 기존 항암약물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경우에 따라 특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 며, 환자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표적항암약물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피부발진, 발열 및 오한, 메스꺼움 및 구토, 설사 또는 변비, 부종, 관절통 및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처방 전 표적항암약 물치료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은 반드시 전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투약하여야 합니다.

Q5) 암종별로 어떤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 암종별로 주로 처방되는 표적항암제는 아래의 표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표적 인 암종 및 성분·의약품만을 기재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종류	대표 성분명(국문·영문)	대표 의약품명(국문·영문)
	게피티니브 Gefitinib	이레사 Iressa
	엘로티닙 Erlotinib	타베바 Tarceva
폐암	아파티닙 Afatinib	지오트립 Gilotrif
別台	크리조티닙 Crizotinib	잴코리 Xalkori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 Avastin
	세툭시맙 Cetuximab	세툭시맙 Cetuximab
유방암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허셉틴 Herceptin
ಗರಿದ	라파티닙 Lapatinib	타이커브 Tykerb

	=======================================	#ITIICI
	퍼투주맙 Pertuzumab	퍼제타 Perjeta
	트라스투주맙 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 Kadcyla
위암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허셉틴 Herceptin
TIG	라무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 Cyramza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 Avastin
대장암	세툭시맙 Cetuximab	얼비툭스 Erbitux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 Stivaga
	소라페닙 Sorafenib	넥사바 Nexavar
간암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 Stivaga
	렌바티닙 Lenvatinib	렌비마 Lenvima
	수니티닙 Sunitinib	수텐 Sutenet
	소라페닙 Sorafenib	넥사바 Nexavar
	파조파닙 Pazopanib	보트리엔트 Votrient
신장암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타 Inlyta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 Afinitor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 Avastin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토리셀 Torisel
방광암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쎈트릭 Tecentriq
	소라페닙 Sorafenib	넥사바 Nexavar
갑상선암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 Caprelsa
	렌바티닙 Lenvatinib	렌비마 Lenvima
췌장암	엘로티닙 Erlotinib	타베바 Tarceva
두경부암	세툭시맙 Cetuximab	얼비툭스 Erbitux
	이매티닙 Imatinib	글리벡 Gleevec
위장관기질종	수니티닙 Sunitinib	수텐 Sutent
양	파조파닙 Pazopanib	보트리엔트 Votrient
(연조직육종)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버가 Stivarga
	올라라투맙 Olaratumab	라트루보 Lartruvo
뇌종양 (교모세포종)	베바시주맙 Bevacizumab	0배스틴 Avastin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 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악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 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 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빈치로봇암수술특약 | 갱신형 무배당 |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간편가입형11), 3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갱 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보장 관련 용어
 - 가. 세부보장 : 특약의 보장을 구성하기 위한 하위 보장단위로. 최초 가입할 때 계약자 는 모든 세부보장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나. 세부보장 구성 : 이 특약의 세부보장은 총 2개로 세부보장1. 세부보장2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 갱신일 :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 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 중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전립 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일반암'은 제1항에서 정의한 '암'중 제2항에서 정의한 '갑상선암'과 제3항에서 정의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⑤ '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흑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암'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 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7) 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일반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동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해당분야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관리 하에 '일반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으로 인한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란 피보험자가 해당 질환을 제거하거나 해당 질환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 또는 질환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까 지는 포함하지만, 해당 질환이나 해당 질환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 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 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이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 (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 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 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 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 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 (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 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은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 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의료법 제54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 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 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 원회를 둔다.
- (7)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신경 BLOCK: 지각신경이나 자율신경에 국소마취제나 신경파괴제를 주입 하여 신경경로의 일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수술시 마취나 통증의 치료. 혈 액순환 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

제5조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라 함은 '일반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분류항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	QZ961

- ② 제1항의 '다빈치로봇 암수술'로 분류되는 수가코드는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보건복지 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수가코드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 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봄 LICI.

[약관용어 설명]

● **다빈치로봇 암수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 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제6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제5조('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 「국민건 강보험법 _ 또는 「의료급여법 _ 등의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 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빈치로봇 암수술'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다빈치로봇 암수술'이 변 경되어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기능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내용 변경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변경내역 및 특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 포함)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 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내용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⑦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 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세부보장1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다빈치로봇 암수술자금1
- 2. 세부보장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전립선암'은 피보

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함): 다빈치로봇 암수술자금2

제8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하지 않고 해당 부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 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 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Cł.
- ④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5)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에 대하여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다빈치로 봇 암수술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7) 계약자와 회사가 제3항 내지 제4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결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8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부터 4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수술증명서, 진료 비세부내역서(수가코드(EDI) 포함), 조직검사결과지 등(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에서 수가코드(EDI)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에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8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험금 등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 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 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 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정당한 사유: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 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항)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LICI.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 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

- 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세부보장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 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 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 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과(부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부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 험기간 만료 후 제2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 Cł.
- ③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을 간편가입형으로 가입할 때 이 특약의 간편가입형만 선택 가능
 - 2. 주계약을 간편가입형 II으로 가입할 때 이 특약의 간편가입형 II만 선택 가능
 - 3. 주계약을 일반가입형으로 가입할 때 이 특약의 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④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Cł.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 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에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 ⑥ 제4항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⑦ 제4항 제3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 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부험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 니다. 다만,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mark>종선고</mark>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6조 【특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 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 로 봅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 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간편가입형 또는 간편가입형 II으로 가입시에 한함)
- ②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부장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세부부장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세부보장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 항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2. 세부보장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 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또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일반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 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9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세부보장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가 이 특약의 세부보장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한 감액비율로 모든 세부보장을 동시에 감액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자가 세부보장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 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5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 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⑦ 갱신계약의 세부보장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부보장을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⑩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⑪ 제10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 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 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⑫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

- 안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③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계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 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 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1조【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20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 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하 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로 서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7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릅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6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 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 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 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 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 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6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7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세부보장1

(기준: 세부부장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사 유	지 급 금 액
다빈치로봇 암수술자금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 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 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2) 세부보장2

(기준: 세부보장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사 유	지 급 금 액
다빈치로봇 암수술자금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전립선암'은 피보험자가 남성인경우에 한함)	2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

- 주) 1.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 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에서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 여부를 판 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호스피스대상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 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다빈치로봇 암수술자금1, 다빈치로봇 암수술자금2, (제7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6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 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 C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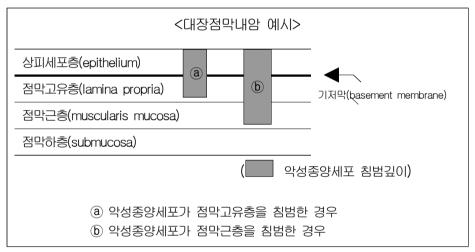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 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 갱신일 :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2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임'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 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 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③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류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 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 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 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라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 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 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류' 중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부험자의 '악' 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기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검색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함)'확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 약제기준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항암화학요법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부록 1>에 기 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록 1> 상 열거되어 있더라도 투약 처방 시점에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의약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 항은 보험약관 <부록 1>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임'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별표 1] '보험금 지 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 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이후에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 합니다.
- ⑤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 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항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 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 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 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7)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항암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5조('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 준으로 합니다.





- (8)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 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결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mark>심신상실</mark>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등)
 - 3.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 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ㅁ. 기타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투약기록지 및 진료기록지
 - 다.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진료기록지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 LICE.
- <mark>정당한 사유</mark>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LICI.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 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 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로 합니다.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가능
 - 2.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2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 간 만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④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 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 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 3.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 제4호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제4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부형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 리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 다. 다만,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mark>종선고</mark>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 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 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험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 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u>미</u>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9)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 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⑫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가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릅 LICt.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 LICI.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 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5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26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특정 항암호르몬약 물허가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 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시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1호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 일'이후에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 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 LICE
 -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8 이 특약의 피부험자가 부험계약일부터 '암부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9.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 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 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0.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항암호 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 니다. 다만, 제5조('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 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부위(최 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 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특정항암 호르몬약물 허가치료자금 (제6조)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 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부록 1]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① 아래 안내장은 보험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하여 보험가입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② 아래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 정항암호르몬치료제'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 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 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 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 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Abiraterone Acetate Micronized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		아비테론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아리미덱스정(아나스트로졸)
2	。 아나스트로졸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테바아나스트로졸정1밀리그램
		에이덱스정(아나스트로졸)

번 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3	아팔루타마이드 Apalutamide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카소덱스정(비칼루타미드)
		비카소정(비칼루타미드)
		카소비트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비칼루타이드	비카루드정(비칼루타미드)
4	Bicalutamide	프로칼린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1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50밀리그램
		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5	비칼루타미드(미분화) Bicalutamide micronized	피엠에스비칼루타미드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미분 화))
6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Cyproterone Acetate	안드로쿨정(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7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
8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80밀리그램(데가렐릭스)
0	Degarenx	퍼마곤주120밀리그램(데가렐릭스)
9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
10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 트륨수화물 Estramustine Sodium Phosphate Hydrate	에스트라시트캡슐140밀리그램(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 트륨수화물)
11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25mg(엑스메스탄)
12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12		풀베트주(풀베스트란트)

번 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0	고세렐린아세트산염	졸라덱스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13	Goserelin Acetate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페마라정(레트로졸)
		브레트라정(레트로졸)
14	레트로졸 Letrozole	레나라정(레트로졸)
	231102010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테바레트로졸정2.5밀리그램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5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Leuprorelin Acetate	엘리가드주4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Leaproreiii Acetate	엘리가드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주3.7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6	Leuprorelin Acetate/Needle	루프린디피에스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lectate/ vecale	루프린디피에스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7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Medroxyprogesterone Acetate	파루탈정(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18	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정4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10	Megestrol Acetate	메게시아정16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번 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타목센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수출명:Tam ooex Tabs.20mg,XifenTabs.20mg,GyraxenTabs.20mg)
	타목시펜시트르산염 Tamoxifen Citrate	타모프렉스정1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10		광동타목시펜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19		타모프렉스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디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데카펩틸-데포(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20	20 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Triptorelin Acetate	데카펩틸주0.1밀리그램(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디페렐린피알3.75밀리그람주(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21	트립토렐린파모산염	디페렐린피알주11.25밀리그람(파모산트립토렐린)
۷۱	Triptorelin Pamoate	디페렐린에스알주22.5밀리그램(트립토렐린파모산염)

[부록 2]

특약 가입자를 위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치료 관련 안내사항

아래의 안내사항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신규 담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및 법령상의 설명의무 이행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1) 특정항암호르몬약물치료란 무엇인가요?

☞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특 정항암호르몬치료제"라고 하고, 이러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사용하여 치료하 는 것을 "특정항암호르몬치료"라고 합니다.

Q2) 암종별로 어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 암종별로 주로 처방되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 용은 대표적인 암종 및 성분·의약품만을 기재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암의 종류	대표 성분명(국문·영문)	대표 의약품명(국문·영문)
	아비라테론 Abiraterone	자이티가 Zytiga
	비칼루타미드 Bicalutamide	카소덱스 Casodex
거리네이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 Nubeqa
전립선암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 Firmagon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 Xtandi
	에스트라머스틴 Estramustine	에스트라 Estra
	타목시펜 Tamoxifen	놀바덱스 Nolvadex
유방암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 Aroma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 Faslodex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 Femara

신장암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Medroxyprogesterone	파루탈 Farlutal
자궁내막암	메게스트롤 Megestrol	메게시아 Megesia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 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 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갱신형,무배당| C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 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 갱신일 :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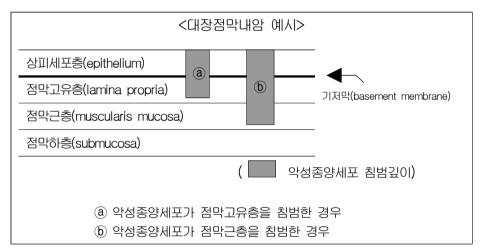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LICt.



- 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흑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7)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 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 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는 제4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 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거나. '보장개시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별표1] '보험금 지 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 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 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 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⑤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세기조절방 사선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 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 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임' 또는 '대장점막내암'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 료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결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LICE.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mark>심신상실</mark>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항암방사선치료확 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인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에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부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 LICE.
- <mark>정당한 사유</mark>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 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 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LICt.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 험기간 만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 Cł.
- ③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기능
 - 2.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2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기능
- ④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 급금을 받은 경우
 -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로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4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 다. 다만,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 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험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 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 LICt.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 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7)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9)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 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⑫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가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릅 LICI.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 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 LICI.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제척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 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5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한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26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항암세기 조절방사선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1,000만원 (최초 1회한)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 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1.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 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

LICE.

- 6.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 니다.
-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8.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9.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 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제 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을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지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항암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자금 (제6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 갱신형,무배당| C 약관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 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 갱신일: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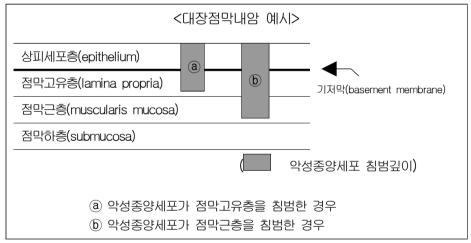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

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 (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 LICt.



- 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흑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7)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약관용어 설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 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 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 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류"라 항은 제4조('항암방사선치류'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치료"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 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 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거나. '보장개시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 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 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 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 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 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⑤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 선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 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 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임' 또는 '대장점막내암'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 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결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LICE.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 <mark>심신상실</mark>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항암방사선치료확 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인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에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

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부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 LICE.
- <mark>정당한 사유</mark> :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때. '불확정 개념'은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 지 않게 서술된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 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 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 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반대증거** :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LICt.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 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 (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지며,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보험계약의 성립)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 험기간 만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 Cł.
- ③ 계약자는 특약을 청약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이 간편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1형(간편가입형)만 선택 기능
 - 2. 주계약이 일반가입형인 경우 이 특약의 2형(일반가입형)만 선택 가능
- ④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특약의 보장이 유효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 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
 - 3.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4항 제4호의 '사망'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로 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4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 다. 다만,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부형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형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 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 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 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험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 보험 가입을 원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단,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시에 한함)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관련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보험 수익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한 때에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경우
 - 2. 제14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④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 LICI.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갱신할 때 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7)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내용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 2.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3. 제5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 등
- ⑧ 제4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 약자에게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9) 제8항에 따라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안내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 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 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일 이내에 그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⑪ 제7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 에 따라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⑫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 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약관용어 설명]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20조【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 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가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수익자가 특정한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회사의 보장개시)를 따릅 LICI.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 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 LICI.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 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 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 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5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약관용어 설명]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26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 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1,000만원 (최초 1회한)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 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1.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 우(이미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 5.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Cł.
- 6. 이 특약에서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 니다.
-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8.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9.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 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제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해당 여부를 판단합 LICI.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주3)}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핵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이 특약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암'에서 제외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타피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타피부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지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4]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	i의 악성신생물	C73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항암양성자 방사선 치료자금 (제6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 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2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청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보험계약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사망보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 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 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보고.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 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 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생존기간 상당분 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하여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를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 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단.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 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 내의 친족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 Cł.

- 1. 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6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2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 인이 청구할 경우)
-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피보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지급기일 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 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8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제11조 【특약 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 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갱신 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 3 관 보험료의 납입

제13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4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

- 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9조(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 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특약의 해지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 립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 액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 특약의 취급)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 LICI.
-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3 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제2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제6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17조 【다른 특약의 취급】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 라 합니다) 및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 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2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의 치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 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부험자 및 부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합니 Cł.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적용대상)의 보 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 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적용대상 주계약 및 특약 약관에서 정한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 다.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고객은 상품소개나 제휴· 부가서비스 등의 목적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 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상품·서비스 정보. 제휴 및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1. 본인 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당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경영관리 목적 또는 반복적 인 업무위탁 등 제외] 이용내역, 제공내역 등을 알려주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1544-4000), 영업점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당사가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 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1544-4000). 영업점

3.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 철회권 및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청구(Do-Not- Call)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 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신용도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 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지하도록 청구 (Do-Not-Call) 할 수 있습니다.

- · 연락중지 신청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http://www.donotcall.or.kr)
- · 동의철회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 (1544-4000), 영업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제출

※ 신청제한

신청자는 신용정보주체에 한함(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금지)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라 당사 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서면, 전 자문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고객 은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당사는 정정·삭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에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당사 홈페이지(https://www.nhlife.co.kr), 고객센터(1544-4000), 영업점
- · 서식 다운로드

5.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및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신용평 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고,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02-2122-4000, 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1577-1006.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6000, www.koreacb.com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www.klia.or.kr

6.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개인신 용정보관리·보호업무 담당자 또는 협회·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관리·보호인 02-3786-8685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담당자: 02-3786-8685

생명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2262-6600, www.klia.or.kr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1332. https://www.fss.or.kr

고객정보 취급방침

NH농협금융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 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애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NH농협금융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 보 또는 자료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 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채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 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 하여 매매 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 안의 평균 거래회수

Ⅱ. 금융지주회사 등의 상호 및 업종

NH농협금융의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금융지주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은행),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농 협캐피탈 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 NH선물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저축은행 주식회 사(상호금융업). NH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부동산투자자문업). NH벤처투자 주식회사(금 용투자업).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제공처

NH농협금융의 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 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NH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 NH농협 캐피탈 주식회사, NH선물 주식회사, NH저축은행 주식회사, NH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NH벤처투자 주식회사,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입니다.

IV.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NH농협금융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 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라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1.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2.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3.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지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4.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5.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 였습니다.
- 6.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7.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통지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8.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 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9.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 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 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은행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생명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NH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NH-Amundi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NH선물	고객정보관리인
NH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NH벤처투자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리츠운용	고객정보관리인	NH헤지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